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8518 판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보조참가인1. C

2. 주식회사 D

피고1. E

2. F

변론 종결2018. 11. 2.

판결 선고2018. 12. 21.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2,411,613원, 원고 B에게 101,148,4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인 경기 가평군 G 임야 2,230m² 1) 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의 지분은 5,291분의 3,528, 원고 B의 지분은 5,291분의 1,763이었다.

나. 위 분할 전 토지는 2016. 10. 27. 경기 가평군 H 임야 524m², I 임야 387m², J 임야 200m², K 임야 380m², L 임야 766m²로 분할되었고, 2016. 11. 1. 지목이 대지로 각 변경되었다(이하 분할 이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동일하므로 번지로 각 토지를 특정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 12. 18.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해서 피고 E와 사이에 '토지매매 및 미준공 건축물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방법(각서)'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였다. 위 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 F는 '매수인' 피고 E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2015. 12. 18.자 각서를 '이 사건 각서'라 한다).

○ 미준공 주택건물 매매: 미준공 4개동(도면첨부 1, 2, 3, 4) 주택은 매매하며, 1개동 5번 주택은 준공 후 은행에서 융자 후 매도인 위임인 참가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각서함.

○ 1개동 미준공 주택 매매대금(토지대금 + 건축공사비) 2억 원: 토목준공비(약 1천 2백만원) + 보존등기비(1개동 신고금액은 2억 5천에서 6천만 원)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최종 계산한다.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1. 위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사채 억원 설정

(사채 공동담보목록: 주소: 서로 협의한다2))

소유주:

현용자: 원,

현시세: 원) - 연대보증인이 한 말에 기준하여 기재하였음

공동담보 및 본 매매토지 설정과 동시에

① 토지주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지급.

② 사채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지급.

③ 은행 1억 2천만 원 상환 - 최종 정산 시 계산.

2. 준공 후 은행용자 이전에 사채금액은 매수인이 상환하여 없앤 후에, 은행용자 대출하여 전액

매도인 및 참가인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미준공 주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각서함. (서로

협의한다)3) 3. 나머지 미준공 주택 매매대금 잔금에 최종 정산 잔금4) 원에 대하여(최종정산 금액은)

2016년 105) 월 306) 일까지 지급하기로 각서함.

라. 원고들은 2015. 12. 18. 피고 E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E의 신고에 따라 2016. 2. 2. 분할 전 토지상의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가 원고들에서 위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① 2015. 12. 18. 원고 A 명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2015.

12. 21.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80,700,000원의

M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140,195,383원을 위 조합에게 대위변제하였으며, ③

2015. 12. 23.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N,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 115,500,000원을 O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바. 2016. 10. 27. 분할 전 토지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5개 필지로 분할된 이후 피고 E은 H, I, K

토지 위에 각 단독주택 1동씩, L 토지 위에 단독주택 2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각 신축하여 2016. 12. 15. 위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 C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이유의 요지

참가인 C은 피고 E의 어머니로서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들로부터 분할 전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부담한 실질적 당사자이다. 피고 E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마땅히 참가인 C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 판단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참가인 C의 주장처럼 위 참가인이 원고들과 사이에서 실질적인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C이 피고 E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위 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 E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책임을 어머니인 참가인 C에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녀관계에 따른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고, 달리 법률적으로 피고 E이 참가인 C에게 패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참가인 C에게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그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들은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P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서도 이 사건 각서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각서의 도면에서 5번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 D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2)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각 단독주택 중 위 5번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총 800,000,000원인데, 피고들 측에서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근저당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총 455,695,383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토목준공비용과 소유권보존등기비용으로 총 40,744,57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합계금을 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미지급 잔금은 303,560,047원으로 계산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금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들과 피고 E은, 2015. 12. 18. 분할 전 토지 및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경기 가평군 Q 임야 189m²)를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단지 참가인 D의 대표이사 R과 피고들 사이에 준공 전 단계에 있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을 피고들이 인도받아 완공하면 이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고들이 지불한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및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 피고들의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서는 R이 2017. 4.경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참가인 D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은 S의 대표 T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초안을 마련하여 피고 E의 날인을 받고, 피고 F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2015. 12. 18.에 작성된 것도 아니다. 즉 위 각서 중 '단독주택 1개동에 대한 200,000,000원의 매매대금 산정'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전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R과 피고 F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2)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R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단독주택의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 및 수익금 배분 약정이 사전에 있었는데, 피고들 측에서는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직접 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완공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한 결과 총 907,561,098원을 지출하였는바, R과의 위 약정 내용을 무시한 채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의사의 합치는 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로 충분한데, 2015. 12. 18.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로부터 피고 E에게 이전된 사실, 2016. 2. 2.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를 원고들에서 피고 E으로 모두 변경된 사실, 위 각 단독주택의 준공 이후 2016. 12. 15. 그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아무런 원인관계 또는 대가관계 없이 피고 E 앞으로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주 등 명의를 변경하는 데 협조하고 이를 용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미등기 신축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건축주 등 명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단독주택 1개동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200,000,000원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들에서 피고 E으로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주 등 명의를 변경된 것은 위 각서에 의한 위 각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이 구체적으로 이행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는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로서 원고들의 대리인 R 및 피고 E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 피고 F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인 피고 E 및 연대보증인 피고 F는 연대하여 매도인인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근거로 원고들로부터

위 분할 전 토지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분할 전 토지만 매도할 의도였다면 참가인 D를 통해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서를 별도로 작성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는 달리 등기관계가 문제될 것 없이 건축주 및 시공사 명의만 변경하면 되었으므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서만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위 을 제1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매매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은] 부분 중 1, 2번 항목에 피고 F가 '서로 협의한다'고 자필로 기재하고, 3번 항목에 구체적인 잔금 대신 R이 '최종정산잔금'이라고 직접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1개동 미준공 주택 매매대금(토지대금 + 건축공사비) 2억원'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항목은 명기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각서의 위 1번 항목에 '서로 협의한다'고 기재한 부분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E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릴 때 구체적인 차용금 액수나 공동담보목록 등을 협의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실제로 위 1번 항목의 하단에는 '① 토지주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지급, ② 사채 1억 원에서 1억 1천만 원 지급, ③ 은행 1억 2천만 원 상환 - 최종 정산 시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략적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430,000,000원을 조달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서의 위 2번 항목은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한 준공 이후 매수인인 피고들 측에서 사채금액을 상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매도인인 원고들 및 참가인 D이 지정하는 자에게 '미준공 주택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로 협의한다'고 기재된 것만을 두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에는 이를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한 사채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단독주택에 관하여 토목준공비용과 소유권보존등기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적어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실제 피고들이 지출할 금원의 액수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사건 각서의 위 3번 항목에 '최종정산금'이라고만 기재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원고들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단순히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은 R이 참가인 D의 대표이사로서 남긴 자필서명만 있다거나 이 사건 각서의 '매도인 E' 또는 '20154. 12. 18.'이라는 오기 등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각서가 안이하게 작성되어 그에 기초한 합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단독주택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성립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구체적인 잔금의 산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총 매매대금으로 정해진 800,000,000원에서 원고 A가 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은 200,000,000원 및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원고들 측의 채무 140,195,383원 및 115,500,000원의 합계금인 455,695,383원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공제를 예정하고 있는 토목준공비용으로 ① 토목설계비 2,200,000원, ② 건축설계비 5,500,000원, ③ 지하수필증비 3,000,000원이, 소유권보존등기비용으로 30,044,570원이 각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합계금인 40,744,570원의 공제도 추가로 자인하고 있다(피고들은 2018. 6. 20.자 및 2018. 11. 1.자 각 준비서면에서 위 ③ 지하수필증비가 8,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이 원고들이 자인하는 위 3,000,000원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참가인 D 측 R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분양대금에 관한 정산 및 수익금 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위 각 금원 외에도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위 토지를 담보로 빌린 사채의 선이자, U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이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준공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 모두 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 16, 17호증(을 제2, 3호증과 제17호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증이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R과 사이의 위 정산 및 수익금 배분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E과 사이에 당시 미준공이었던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완공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분할 전 토지 및 미준공의 위 각 단독주택을 한꺼번에 그 상태 그대로 매도하면서 다만, 총 매매대금 800,000,000원에서 토목준공비용과 소유권보존등기비용만을 공제하기로 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사전에 공제 대상으로 합의된 항목 외에는 피고들 측에서 그 필요에 따라 돈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완공을 위하여 소요된 81,006,11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원고들이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원고들의 각 잔금청구채권에서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는데(2018. 11. 1.자 준비서면 5 내지 8쪽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단독주택의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 미준공 상태의 현황 그대로를 매매목적물로 정한 것이므로 매매계약 이후 피고들이 투입한 공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상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들 측에서 분할 전 토지와 관련하여 불법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 등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2018. 5. 10.자 답변서 9, 10쪽 참조), 위 주장을 그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으로 선행하여 보더라도,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측에서 불법 산지전용 및 그로 인한 복구명령 발령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각서에 따른 매매계약상 미지급 잔금은, 위 800,000,000원에서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하는 위 1)항의 455,695,383원 및 40,744,570원을 제외한 303,560,047원(= 위 800,000,000원 - 455,695,383원 - 40,744,57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들은 개별적으로 위 돈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각 지분 비율(원고 A 5,291분의 3,528, 원고 B 5,291분의 1,763)을 곱한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① 원고 A에게는 202,411,613원(= 위 303,560,047원 $\times$ 3,528/5,291, 원 미만은 버린다), ② 원고 B에게는 101,148,434원(= 위 303,560,047원 $\times$ 1,763/5,291, 원 미만을 버릴 경우 101,148,433원으로 산정되나 피고들이 지급해야 하는 잔금의 전체 액수를 고려할 때, 원고 B에 대하여는 위 303,560,047원에서 원고 A가 청구하는 한편 실제 인용되는 위 202,411,61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1,148,434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C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차은경

판사 김은영

판사 원도연

- 1) 2016. 10. 25. 경기 가평군 H 임야 2,257m²로 등록전환되었다.
- 2)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3)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4)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5)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 6)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